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11. 29.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4:00~17:5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221호~제227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2년도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96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투자한 금액 대비 상장주식 비중이 낮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 조정하고 관여하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다른 고려 사항은 없는지?

- (보고자) 없을 것으로 보임. 1억 원 이상만 해도 '정직'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투자원금이 단돈 1,000~2,000

만 원만 되어도 '감봉'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금투업자에게 주어지는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임. 금액이 자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기계산으로 투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로 이해해주시기 바람.

○ (위원) 자기매매 규제 목적이 무엇인지?

- (보고자)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선행매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금투업자가 건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위원) 이해상충이나 불공정매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면 자기매매에 해당이 된다면 목적이나 동기와 무관하게 통지의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 (위원) 저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사실상 우회하는 계열사라든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을 자기매매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 봄. 시장에 주는 의미가 있

다고 생각이 되며,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열사나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손익귀속의 인정범위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즉 당국이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위법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임. 그 지침을 마련하고 증선위에 보고해 주시는 시점에 동 사안을 의결하고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후에 금감원에서 위장 계열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위법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점검을 나가는 검사까지도 연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임.

- (보고자) 동 조항의 규제 준수가 어려운 사항은 아님. 신고절차만 거치면 현재와 같은 투자구조가 가능한 구조임. 큰 틀을 정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정하고 업계에는 이러한 사항을 좀 알려서 이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음.
- (위원) 지침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지침을 넘어서는 부분은 자기때대로 보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한 금융상품 투자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해야 지금 사안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고 조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지침을 제안한 취지임.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07호 『(주)크레타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08호 『메가מיד아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09호 『(주)지알에스 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주)크레타투자자문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에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완료했는데 2021년 1월부터 3월도 미제출기간에 포함되어 있음.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는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국세청의 폐업신고와는 별개로 회사를 완전히 청산하기 전까지는 회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음.

○ (위원) 폐업임에도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임.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98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1안)과 (2안)이 다 나름대로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2안)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함. 두 건이 거의 동시에 동일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조합원의 경우 일일이 집계하는 초기라는 점과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서 감경을 하는 것인데, (1안)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위반한 경우의 제재수준보다 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너무 과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감경의 당초 취지를 고려해서 (2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 같은 의견임. 25% 감경 시에 단독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과징금의 회사에 부과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임. (2안)에 찬성함.

○ (위원) 저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에서 제시한 두 안 중에 감경금액이 조금 더 큰 (1안)에 찬성함. 제 생각에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것을 좀 더 많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 (보고자) ○위원님께서 자진신고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진신고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임. 원래는 부과비율을 1.8%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진 신고한 점을 감안해서 1.2% 하향하였음.

○ (위원장) 두 분의 위원님께서 25% 감경안, ○위원님께서 50% 감경안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25% 감경안으로 증선위가 의결하면 어떨까 함.

○ (위원) 동의함.

○ (위원장) 제198호 안건은 모집 및 매출이 동일자에 동일 대상에 대해 이루어진 점, 자진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억 780만 원, □□□, ■■■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각각 1,34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10호 『(주)광무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11호 『(주)에프앤가이드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54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치대상자 공개추진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고발, 통보 등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개가 안 되고 그보다 위반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공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음.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공개가 안 되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향후에 형이 확정되는 등 위법행위가 확정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함. 위법행위가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공개가 안 되고 일종의 행정제재수준의 대상자들만 공개가 되는 효과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저희가 단계적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

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하여 향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음.

- (위원)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해도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공개에서 아예 빠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가지고 있으신지?

- (보고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한 경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 내지 증거인멸 그런 것들 때문에 관행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소 제기 이후 또는 확정 판결 이후에 동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사 당국과 추가협의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55호 『2022년도 상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56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57호 『(주)○○○○○○○○ 등 22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긴급조치 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212호 『현대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13호 『삼정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14호 『한울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15호 『정진세림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16호 『인덕회계법인의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17호 『삼덕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제216호 관련)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방안 및 보도자료를 보면 감독기관에서도 감사보조자에 대한 3분의 2 교체 규정 폐지를 추진한 적이 있었으며, 그 근거로 국제윤리기준 등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이며, 이사의 통제하에 있어 기업과 유착가능성이 낮은 보조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있었음. 또한, 저희 회계법인인 2016년과 2021년에 감사인 감리를 받았는데 두 번 연속 ○○○○(주)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에 선정되었으며, 경미한 지적사항 외에 주요지적사항은 없었기에 실질적인 독립성 위배 및 감사실패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첫 번째 진술인(제216호 관련)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제217호 관련)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당시 감사수행팀이 상호변경에 따른 주식보유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고 행위자의 입법상 관리감독 책임에 있어서 당시 업계관행상 제가 감독자로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절차를 모두 취했으므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실질적인 감사착수 전 ▲▲▲ 회계사 배우자의 보유주식 처분에 따라 독립성 침해가 치유되었고 대상 회사인 (주)●●●●●●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실 요건 모두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위원) 2020년 6월말에 이사 사임 후에는 실질적으로 (주)●●●●●●●●에 대한 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 두 번째 진술인(제217호 관련)이 퇴장함.

- (위원장) 제212호부터 제215호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16호 및 제217호 안건에 대하여는 1단계 추가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원안의결(제212호~제215호) 및 수정의결(제216호, 제217호)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제212호~제215호) 및 수정의결(제216호, 제217호)함

(15시 57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 의결안건 제218호 『한우 및 미술품 관련 5개 조각투자 서비스의 증권성 여부 및 (주)스타키피 등 5개사에 대한 조치안』, 의결안건 제219호 『(주)뮤직카우의 사업재편 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면제안』을 일괄 상정함.

- (위원)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함으로써 투자보호측면에서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아울러 미술품과 관련된 새로운 자산시장을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기여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점, 사업자들의 자본여력이 아주 충분하지 않은 점, 투자대상자들이 일반투자자인 점 등을 고려해서 행어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충실히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20호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준법감시인임. 당사의 직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확인을 생략한 채 매매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위반행위의 동기는 모두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전제로 하는 '중'이 아니라 '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 계좌이용내역이나 계좌현황은 계좌 명의인한테 계속 통지가 가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위 문제가 된 계좌 중에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계좌가 있었는지?

▶ (진술인) 없었음.

○ (위원) 17건은 계좌개설 시에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설 당시에는 위임장이 제출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 (진술인) 그러함. 주문 대리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되었음.

○ (위원) 자체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진술인) 경징계임. '주의'에서 '견책' 정도일 것임.

○ (위원) 감독의 의무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징계를 고려는 해 보셨는지?

▶ (진술인) 당연히 고려하였음. 감독자 책임을 묻기도 하고 1단계 경감해서 하기도 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견책'이기 때문에 감독자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았음.

▶ (진술인) 임직원 자기매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 (위원) 말씀하시기 바람.

▶ (진술인) 당사 직원들에 대한 현재의 과태료 부과(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본 건은 회사가 자체조치를 완료한 건이므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6조를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과 같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임. 본 건의 경우도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까지 완료한 이상 검사 및 제재규정 제26조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당사는 제재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가 있음. 본 건과 같이 회사가 스스로 조치를 완료하였음에도 감독당국의 징계 및 과태료 조치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부통제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됨. 금융회사 내부통제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과태료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201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어머니한테 주식을 상속하였는데 OOOO증권에 있던 계좌를 제

가 관리하려다 보니 제 핸드폰에 OOOO증권을 깔아서 매매를 제가 계속 했었음. 그렇게 해서 계속 어머니께 매월 생활비를 드리고 필요한 자금들을 드리는 역할을 했음.

○ (위원) 진술인 앞으로도 상속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 (진술인) 제 계좌는 제 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신고하고 거래했음.

○ (위원) 모친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 (진술인) 그 당시에 이미 80세가 넘으셨고, 또 치매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매매할 능력이 없으셨음.

○ (위원) 진술인께서 거래만 대신해서 하신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거래뿐 아니라 출금도 해서 제가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도 하였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고모 명의의 계좌는 전적으로 고모 자금으로 개설되었고, 고모 본인에게 주식매매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귀속되었음. 고모에게 차용했던 돈을 이체해 준 것이므로

전적으로 고모의 자금임. 방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계좌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2017년 3월 14일경에 본인 명의로 고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했는데, 왜 입금을 하신 것인지?

▶ (진술인) 제가 2016년 6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세금과 이사 비용이 부족해서 고모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렸고 그것을 고모가 2017년부터 주식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주식 계좌로 제가 빌린 돈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제가 2017년 3월에 고모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본인 계좌하고 고모님 계좌의 종목이 비슷한지?

▶ (진술인) 비슷하지는 않음. 고모는 관심 있었던 종목들을 저한테 매매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정확하게 겹치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음.

○ (위원) 고모님이 종목을 선정해서 주문을 부탁했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제가 증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어떠한 어떠한 섹터나 어떠한 어떠한 종목들이 요즘 유명한지를 물어보셨고, 이러한 쪽의 종목들이 좀 유명하다고 말씀드리니 그것을 사달라고 하셨음.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네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셨던 부모님과 저는 사실상 경제적 운명공동체가 되었고 문제가 된 어머니의 계좌는 저의 계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의 계산으로 운용이 되었음. 동 계좌의 자금은 제출한 자료처럼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과 장모님으로부터 조달되었으며 저는 자금운용의 역할을 하였음. 동 계좌는 해당 기간에 1억 6,700만 원이 넘는 큰 손실을 보는 등 그 어떤 경제적 이득도 얻지 않았음. 이러한 모든 점을 참작해 주셔서 선처를 간곡히 호소 드림.

▷ 네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다섯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문제가 된 계좌는 저희 어머니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어머니가 2015년부터 HTS(Home Trading System)로 계속 운용해 오셨던 계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바일로 도와드린 이후에 이 계좌가 차명으로 오인되어서 회사를 통해 '주의' 징계를 받았음. 모친의 계좌에는 자금출처가 명확히 입금 전 발생시킨 모친의 신용카드론이고 모친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저에게 받아왔던 일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었으나 그것 또한 본인께서 직접 납입한 것임.

○ (위원)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인데 왜 대리해서 주문을 하셨는지?

▶ (진술인) 어머니께서 외부활동을 하셔서 저에게 부탁을 많이 하셨음.

○ (위원) 회사에 충분히 소명을 하셨음에도 징계가 내려진 것인데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 (진술인) 제가 제 명의의 MTS(Mobile Trading System)로 주문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적으로 미숙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제 명이나 제 핸드폰을 통해서 업무를 도와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음.

▷ 다섯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여섯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자기계산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느냐는 것임. 해당 계좌가 제 아내 소유의 계좌가 맞으면 해당 조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도 해당하지 않음. 금융감독원에서는 검사하는 동안 저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전화 통화나 대면 소명 한번 없이 저와의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처결하였음. 메리츠증권(주) 자체감사에서도 해당 계좌를 감사한 결과 해당 계좌의 소유주는 제 아내임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주문을 대신 내준 부분만 저의 실수로 판단하여 '주의' 조치로 이미 처결한 사안임. 아내의 주식투자자금 원천이 아내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자금이며, 이는 아내 계좌의 자금거래내역으로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음.

○ (위원) 문제가 된 계좌에 본인과 부인께서 같이 거래를 하셨는지 아니면 본인만 거래를 하셨는지?

▶ (진술인) 저는 거래를 하지 않았음. 자금만 빌려주고 상환을 받은 것뿐임.

○ (위원) 배우자의 부탁으로 주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서 본인이 매매주문 한 것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닌지?

▶ (진술인) 아님. 그런 적 없음.

○ (위원) 회사에서는 '주의' 조치를 받으셨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서 '주의' 조치 결정을 하였고 본인은 왜 그것을 받아들이셨는지?

▶ (진술인) 회사가 '주의' 조치를 낸 것은 제 휴대폰으로 그 계좌에 주문 나간 것이 그 기간 동안에 7건이 있었음. 회사에서는 이것이 제 계좌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차명거래계좌가 아니냐고 회사에서 감사를 했는데 집사람 계좌가 맞다고 보고 제 휴대폰에서 주문 나간 것에 대해서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 조치를 내린 것임.

- (위원) 아내를 대신해서 주문을 해 주신 것이 7번 있었다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그러함.

▷ 여섯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과 관련해서 친인척 관계이고 한 건이 법인과 법인 소속 직원의 관계라고 하셨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지, 사실상 대리권 수여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추인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반드시 공식적인 위임장을 제출해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위반하면 제재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보고 싶음.

- (보고자) 자본시장법규상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주문 수탁을 받을 때는 요건을 정해 놓고 있고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그 요건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친족관계를 불문하고 주문대리인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이와 관련한 검사를 할 때 주문과 관련한 명시적인 서면에 의한 위임장, 그런 대리인에 대한 확인의무를 거치지 않는 것들은 일관되게 지적을 해 왔음. 다만, 과태료 부과 시 위반의 동기를 감안할 때 참작사유로 동기를 '중'으로 낮춰서 산정한 바 있음. 또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도 자체 적발 징계사항이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50% 감면해서 산정된 사안임.

- (위원) 회사가 자체 조치를 완료한 건이므로 과태료 50% 감면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 (보고자) 임직원 매매와 관련해서 자체 징계사안이지만 저희가 인지한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009년 2월 이후로 거의 14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임직원분들이 이 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이행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음. 제재규정상 개인회생절차 등 명시적인 근거에 따른 경우에는 금감원장 권한으로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하고 있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임의로 재량범위 내에서 면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선위까지 부의하게 된 것임. 그리고 자체 징계 건에 대해서 50% 감면 규정을 준법감시인이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체 징계 건은 회사의 노력 또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 (위원장) 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하거나 내부감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준법감시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아니라 제재대상자에 대한 감경을 요청한 부분이 있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존중이 되어야 회사의 자체감사가 활성화되고 그러한 것들이 저희 당국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 회사가 자체감사를 하고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경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됨.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하여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감경할 수 있을지, 임직원 매매제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 자금의 비중, 본인 주문 비중, 그다음에 소명이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더 감안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 증선위에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음. 마지막으로 기관 조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신지?

○ (위원) 이견 없음.

○ (위원) 이견 없음.

○ (위원장) 제220호 안건은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과 관련하여 OOO증권(주)에 대한 제재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안건을 보류하겠으니 차기 증선위에 분리상정하기 바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221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의결안건 제222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의결안건 제223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의

결안건 제224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의결안건 제225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의결안건 제226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의결안건 제227호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정기보고서 미제출이나 거래량 미달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 허용 및 개선기회를 부여 했는데 이것이 실질심사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말하는 것인지?
 - (보고자)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심사 사유가 아니라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이 되어 지금은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내용이었음. 개정안은 실질심사 전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은 받아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한 번 들어보겠다는 내용임.
- (위원)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10일이 경과할 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종목 지정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 (보고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함.

○ (위원)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에도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유효한 것인지?

- (보고자) 관리종목 지정사유에서는 제외를 하고 5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53분 폐회)